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신규제정 2000.07.10 대통령령 제16900호
일부개정 2006.08.29 대통령령 제19663호
[시행 2013. 3.23] 타법개정 2013.03.23 대통령령 제24425호
[시행 2014.11.19] 타법개정 2014.11.19 대통령령 제25751호
[시행 2016.11.30] 타법개정 2017.7.26 대통령령 제28211호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 02-2100-3515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〔전문개정 2012.9.21〕

제2조(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)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(이하 "지방연구원"이라 한다)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인구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) 100만 이상의 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 (개정 2016.11.29)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.
③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, 2016.11.29., 2017.7.26)

- 설립발기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생년

월일 ·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) 1부

2. 정관 1부

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(出捐)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4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·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

5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

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

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, 2017.7.26)

1.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

2.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(財源)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

3.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

[전문개정 2012.9.21.]

제3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①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· 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· 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전문개정 2012.9.21]

제4조(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) ①법 제17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"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.

②시 ·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, 2017.7.26)

[전문개정 2012.9.21]

제5조(결산서 등 제출기한)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"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]

제6조(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 · 감독 등) ①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 · 감독,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 ·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·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, 2017.7.26)

[전문개정 2012.9.21]

제7조(자료의 제공) ①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]

제8조 삭제 (2016.11.29)

제9조 삭제 (2016.11.29)

제10조 삭제 (2016.11.29)

제11조 삭제 (2016.11.29)

부 칙〈제25751호, 2014.11.19〉 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0>까지 생략

<231>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2항, 제6조제2항, 제8조제3항 · 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"안전행정부"를 각각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
<232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 칙〈제28211호, 2017.7.26.〉 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86>까지 생략

<187>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2항 및 제6조 제2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"행정자치부"를 각각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<188>부터 <388>까지 생략

별표 / 서식

[서식 1] 법인설립허가신청서

[서식 2] 법인설립허가증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

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법인설립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 간
신청인	성명(한글) (한자) 주소	생년월일 (전화번호:)
법인	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	(전화번호:) 생년월일 (전화번호: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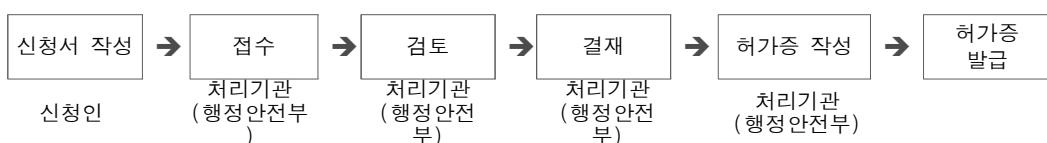
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설립발기인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) 1부 2. 정관 1부 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자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· 지출 예산을 작성한 서류 1부 5. 입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 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m² (재활용품)]

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제 호

법인설립허가증

1. 법인 명칭 :

2. 소재지 :

3. 대표자

성명 :

생년월일 :

주소 :

4. 사업 내용

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m²]